

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56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3월 3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3년 1월 10일 박성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424호)과 2023년 2월 6일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487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시장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시책 강구 방안을 넘어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함.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개정에 따라

학교예술강사들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에 사회적 배려 대상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(안 제5조제3항).
- 나.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다.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11조제3항).
- 라.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규정함(안 제14조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보장하여”를 “보장·확대하여”로, “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실시”를 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문화예술인”을 “문화예술인, 학교예술강사”로, “학교공연·전시·상영 등 문화예술교육”을 “문화예술교육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,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) 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<u>보장하여</u>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<u>실시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보장·확대하여</u> ----- ----- <u>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</u>-----.</p>
<p>제6조(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) ①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6조(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·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p>
<p>제11조(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<u>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·전시·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1조(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문화예술인, 학교예술강사</u> ----- <u>문화예술교육</u>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제14조(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)</p> <p>① <u>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4조 (생략)</p>	<p>제15조 (현행 제14조와 같음)</p>